

## [후보자등록절차] 후보자등록준비-후보자추천 및 유의사항

### 후보자추천 및 유의사항

-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당내경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
-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인원

대통령	국회의원/구·시·군장	시·도지사	시·도의원	구·시·군의원
3,500~6,000명	300~500명	1,000~2,000명	100~200명	50~100명

- ※ 대통령선거 : 5 이상의 시·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·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
- ※ 시·도지사 : 당해 시·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·시·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
- ※ 구·시·군의원 :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
- 추천방법 :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검인·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, 추천시 추천자의 서명(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함) 또는 날인(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)
- 추천장 검인·교부 신청
  - 신청자 :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
  - 신청기간 :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(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  
(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)

- 신청처 :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

- 신청서식 : [다운로드](#)

<유의사항>

- ※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선거권자(예 : 공무원)도 추천이 가능함
- ※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
- ※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
- ※ 추천장 서식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“주소”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시 행정동명(○○동)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



[별지 제11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19조제3항 관련) <개정 2017. 1. 23.>

## 후보자추천장(검인)·(교부)신청서

1. 선거명(선거구명)
2. 입후보예정자
  - 가. 성 명
  - 나. 주민등록번호
  - 다. 주소(전화번호)
3. (검인)·(교부)신청매수    매

      년    월   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(검인)·(교부)를  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(입후보예정자)    ○○○    인

### ○○선거관리위원회    귀중

주 :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“선거구명”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